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11.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11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11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상덕규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화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강동 주민센터 임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2조 관련 별표 “동주민센터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” 중 도화동과 용강동의 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을 「도화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화 2길 77에서 도화길 37」로 변경하고, 「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토정로 29길 3-6에서 토정로27길 14」로 변경함.
- (2) 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2년 4월 16일부터, 도화동주민센터 소재지변경은 2012년 8월 6일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화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강동 주민센터 임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